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 법무담당관 박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운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1004  
 시행일자 1999. 3. 24. (년)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위급							
보존	년	시		장			
기피예산 실장	전 결	29		10		영 2	
법무 담당관	박돌봉					기재 1999. 3. 24 기피예산실장 14	
★ 기안	운영권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법조	

## 제목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 발령

1. 서울특별시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3. 25.(목)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6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3. 25.(목)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6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 끝.

##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회계과장

제목 : 예규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3. 25.(목)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62호

첨부 : 발령목록 1부. 끝.

## 법 무 담 당 관

# 예 규 발 령 목 록

□ 총 1건 (페이지)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 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	제662호	회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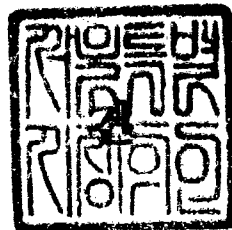
1999. 3. 24  
기술예산실장

서울특별시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 동시

입찰 운영 기준 폐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9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고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안

##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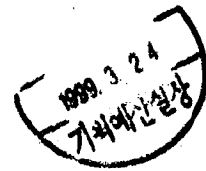
우리시의 기술용역 동시입찰운영기준은 소수업체간 담합입찰 방지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행정규제의 소지가 있고 '99.2.18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으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시정기획판과 합의 되었음.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안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731-6252, 6652 / 전송 (02)731-6955  
 처리부서 : 회 계 과 (시청본관 2층) / 과장 권택상, 담당사무관 김병한, 담당 윤희원

문서번호 회계45110-1222

시행일자 1999. 3. 13

수신 법무담당관

신청 접 수	무담당관	1999. 3. 13	지 시	
	일자 시간	1999. 3. 13	결 재 · 공 람	구보상
	번호	703		김병한
	처리과			이준호
	담당자			

**제목**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 폐지 발령 의뢰

1. 우리시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서울시예규 626호 '96.11.5)을 별첨과 같이 폐지 발령 의뢰합니다.

따로붙임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안) 1부. 끝.

회 계 과 장 권택상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안

제 1 차	1999.3.17	제 4 호
담당자	정책실사민총	김수환담당
이승복	이재민	유종우

##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시의 기술용역 동시입찰운영기준은 소수업체간 담합입찰 방지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행정규제의 소지가 있고 '99.2.18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으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시정기획관과 합의 되었음.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폐지기준안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회계45110-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99. 2/13

회계과장	행정관리 국장	행정 1 부시장	시 장
		전 결	
권행상	인 씨 현		이 권 현
협 조	시정기획관 이 사 권 오 법무담당관 박 승 보		

**技術用役 同時入札 運營例規 廢止計劃**



**行 政 管 理 局**  
**( 會 計 課 )**

# 技術用役 同時入札 運營例規 廢止計劃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동시 입찰 제도는 소수업체간 담합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행정규제의 소지가 있고 '99. 2.18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례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I. 現 況

###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서울특별시 예규 제626호('96.11.5 제정)

### □ 현 운영실태

- 기술용역 발주처(발주처) 소수업체(2~7개사)간 담합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자 사업주관부서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기술제안서 평가후 적격업체선정
-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선정된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서를 인계받아 개찰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II. 廢止事由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소수업체(2~7개사)만 선정하던 기준이 행정규제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정 점수이상의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기술용역 동시입찰 운영체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음.

### \* 건설기술용역 수행능력 평가 및 업체선정방법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99.2.18 개정)

중 전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50억원미만 : 5~7개사 선정</li> <li>- 50억원이상 : 2~3개사 선정</li> </ul> </li> <li>○ 실시설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0억원미만 : 5~7개사 선정</li> <li>- 10억원이상 : 2~3개사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금액이상(2억원) :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모든 업체</li> </ul> </li> <li>○ 실시설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금액이상(2억원) :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모든 업체</li> </ul> </li> </ul>

## III. 檢討意見

- 상위 법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우리시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 동시입찰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 따로붙임 :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 동시입찰 운영기준 1부

□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인원 조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 설계용역(감리용역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90점이상인 자
- 단, 참여업체가 15인미만인 경우 전 업체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90점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는 차점자 포함 15위까지 선정

※ 설계용역 평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

토 목 분 야		건 속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항 목	배 점
합 계	100점	합 계	100점
참여기술자	50	설계의 예술성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참여기술자	50
신 용 도	17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신 용 도	20
전차용역 수행성실도	3		

技術用役に 대한  
技術 및 價格 同時 入札 運營 基準

서울 特別市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

제1조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용역의 기술 및 가격동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소속 관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행하는 건설 기술용역등.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에의거입찰참가자를 사전선정하여 집행하는 기술용역등.

제3조 (입찰광고) ①사업주관 부서의장은제2조의각호에서정한 용역을 입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장과 협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용역건명
2. 용역과업설명 일시
3. 입찰참가등록기한 및 장소
4. 기술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기한
5. 용역수행계획 및 주요과업내용
6. 총용역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7. 사업기간
8. 입찰참가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9.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술 및 가격동시입찰 시행공고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국제입찰대상 용역은 40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의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의거 입찰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계약 부서의장에게 공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과업 내용 설명 실시) ① 사업주관 부서의장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전에 입찰대상 기술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업내용 설명시에는 과업지시서, 신청안내서 등 관련자료를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통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사용인감신고서, 위임장 포함)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찰보증금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계약관련부서의장은 입찰참가 신청마감후 지체없이 사업주관부서의장에게 입찰참가 신청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서제출 및 판리) ①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서 제출일 마감시까지 용역수행계획서및 가격입찰서를 사업주관부서의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의거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별지2호 서식)는 입찰서 보관용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입찰자,사업주관부서의장이 간인하여 계약부서에 인계시까지 금고등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①사업주관 부서의장은 입찰서 접수 후 입찰참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입찰참가 적격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신청자가 제출한 용역 수행계획서,건설기술자의 능력,용역의 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요청) 사업주관부서의장은제7조제2항에의거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후 3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리관(분임경리관)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시행품의서
2. 입찰참가적격대상자 명단
3. 과업지시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제6조제2항에 의거 보관하고있는 입찰참가적격 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

제9조 (입찰서 개찰 및 참관) 경리관(분임경리관)은 입찰참가적격자에게 개찰일,개찰장소등을 개찰일 1일전까지 통보하여 입찰서 개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결정 및 공개) ① 제3조에 의거 사업주관 부서의장의 입찰공고후, 경리관(분입경리관)은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7일전까지 기초 금액의  $\pm 2\%$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에비가격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10개의 복수에비가격은 입찰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개한후 개찰에 참가한 입찰 참가자가 그중 3개를 각각 추천하여 그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입찰서의 개찰참가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만, 추정가격이 1.51억원이상인 용역은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낙찰자결정) ① 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에의거 예정가격의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추정가격이 1.51억원이상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제7조에 의거 기술수행능력평가결과 우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입찰등과 수의계약) ①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평가결과 최우수업체순으로 하되 가장유리한 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기술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2. 국가물당사자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

**제14조 (기타사항) 용역수행계획 안내 및 입찰공고 등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물당사자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